

# 대학 발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.)의 사명과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립·운영하는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'발전계획'이라 함은 특성화 계획을 포함하여 건학 이념을 실현하고 대학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, 목표, 추진 전략, 추진 체계, 세부 실행 계획, 예산 등을 말한다.

## 제2장 운영

**제3조(계획의 수립)** ① 발전계획은 기획처에서 입안하여 대학발전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립한다.

② 발전계획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한다.

1. 대학 외부 환경 분석
2. 대학 내부 여건 분석
3. 대내·외 의견 수립
4. 대학 발전 및 특성화 전략 수립
5. 연간 사업 계획 수립
6. 실행 과제 선정

③ 발전계획의 수립은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다.

④ 수립된 발전계획을 통해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에게 공유한다.

**제4조(운영)** ① 발전계획의 수립, 추진, 평가, 환류 등 업무 전반은 기획처에서 관장하며, 관련 부서 및 학과의 장은 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기획처는 매년 1학기 시작 전 행정부서 및 학과와 대학 발전계획 수립과 이행에 관한 전략과제별 성과목표를 세워 대학발전기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.

**제5조(평가 및 환류)** ① 대학발전기획위원회는 매년 대학 발전계획을 평가하며, 기획처는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 발전계획 결과 보고서(자체평가보고서)를 매년 1회 상반기 중 대학발전기획위원회에 보고한다.

1. 대학 발전계획 실행과제별 성과
2. 행정부서 및 학과(부)의 성과지표 평가

② 기획처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의 장 및 학과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발전계획 운영의 평가 결과는 차기 발전계획 수립시 환류하여 반영한다.

**제6조**(대학발전기획위원회)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·평가하기 위하여 대학발전기획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① 위원회의 구성은 기획위원회로 같음한다.

② 대학발전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 장·단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대학 장·단기 발전계획 집행 및 실적평가와 관련된 주요 사항
3. 기타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7조**(회의) ①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8조**(기타)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 제 규정 및 각종 지침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정과 폐지는 대학발전기획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시행한다.